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2
------------	------

발의연월일 : 2017. 7. 4.

발의자 : 최연혜 · 조경태 · 곽대훈

박대출 · 정운천 · 김정재

권석창 · 김도읍 · 이명수

이채익 · 경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법정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정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한 재판 등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過怠料는”을 “과태료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이를 賦課·徵收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2條(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 11條의 規定에 의한 <u>過怠料는</u> 그 不動產의 所在地를 관할하 는 市長등이 <u>이를 賦課·徵收한</u> <u>다.</u></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u>過怠</u> <u>料를 賦課할 때에는 그 위반행</u> <u>위를 調査·확인한 후 위반사실</u> <u>과 過怠料의 금액을 書面으로</u> <u>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過</u> <u>怠料 處分對象者에게 통지하여</u> <u>야 한다.</u></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 를 할 때에는 미리 10日 이상 의 期間을 정하여 過怠料 處分 對象者에게 口述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 야 한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第2 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長등에</p>	<p>第12條(過怠料의 賦課·徵收) ① - -----<u>과태료는</u> <u>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u> -----<u>부과·징수한</u> <u>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 등으로부터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長 등은 지체없이 目的不動產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支院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地方法院 또는 支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다만, 非訟事件節次法 第248條 및 第250條중 檢事에 관한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⑦ (생 략)

⑧過怠料의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삭 제>